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07

발의연월일: 2025. 2. 12.

발 의 자:양부남·권향엽·김문수

김한규 • 김현정 • 이개호

이광희 • 이해식 • 전진숙

정진욱 · 채현일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3년부터 실시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시범 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현재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.

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 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제도 안착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「지방자치법」에 규정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 신설).

#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 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 회에 위탁할 수 있다.
  - 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
  - 2.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
  - 3.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 면 동 행정사무의 협의
  - 4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읍·면·동 행정사무의 수탁
  - 5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
  -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
-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⑦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8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주민자치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0조 규정에 따라 설치 ·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로 본다.
- 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0조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&lt;신 설&gt;</u>	제27조의2(주민자치회의 설치 등)
	①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
	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
	<u>읍·면·동에 해당 행정구역의</u>
	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
	<u>를 둘 수 있다.</u>
	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
	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, 조례
	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
	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
	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
	<u>다.</u>
	③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
	업무를 수행한다.
	1.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
	구성과 운영
	2. 주민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
	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수행
	3.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
	있는 읍·면·동 행정사무의
	<u>협의</u>
	4.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
	관련되지 아니한 읍・면・동

#### 행정사무의 수탁

- 5. 그 밖에 관계 법령, 조례 또 는 규칙으로 위탁한 사항
- ④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위촉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자치회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⑦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관련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 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⑧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조례로 정한다.